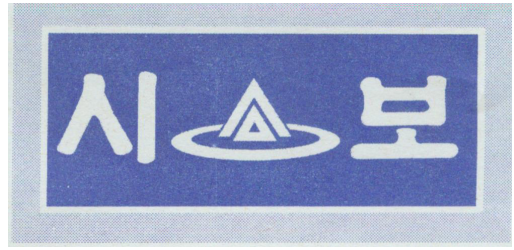


#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431호 2011. 8. 16.(화)

## 【훈 령】

- 제191호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1

## 【고 시】

- 제2011-77호 공주 정안 2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9

## 【공 고】

- 제2011-758호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27
- 제2011-760호 드림스타트 전문수행인력 채용계획 공고 ..... 31
- 제2011-775호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4

회 람							
--------	--	--	--	--	--	--	--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1년 08월 16일

공주시 훈령 제 191 호

###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단장과 실·과장, 팀장”을 “국장과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발부하량이 1.0킬로그램/일 이하인 소규모개발사업은 위원회의 협의 없이 담당부서에서 선정과 가할당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를 각각 “통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불인·허가”를 “불인가·불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대하여는”를 “대해서는”으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규정」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공주시수질오염총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역개발계획 사업 중 우선협의를 개발사업 선정
2. 현안 및 시급 사업 발생시 우선협의를 개발사업 재조정
3. 개발부하량 가할당 및 회수 조치 사항
4.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에 관한 협의 사항
5. 그 밖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에 관계된 각 호의 국장과 담당관·과별 부서장이 된다.

1. 시민국장
2. 기획담당관
3. 문화체육과장
4. 관광과장
5. 경제과장
6. 건설과장
7. 도시과장
8. 허가과장
9. 환경과장
10. 수도과장

## 11. 축산과장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수질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개발사업) 금강수계 오염총량 관리기본방침 제2조제9항에 의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p> <p>2. (생략)</p> <p>제6조(개발부하량 및 개발계획) ① 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개발부하량의 범위 안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7조(수질오염총량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략)</p>	<p>제5조(개발사업) ----- ----- -----.</p> <p>1. ----- ----- ----- -----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p> <p>2. (현행과 같음)</p> <p>제6조(개발부하량 및 개발계획) ① ----- ----- ----- 범위에서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수질오염총량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u>통보</u>를 받은 개발할당자는 개발부하량 가할당 <u>통보</u>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별표 3의 「개발부하량 가할당개발사업자의 동의 및 서약서」를 수질오염총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개발부하량 회수 조치) ① 위원회는 개발할당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개발사업을 특별한 사유없이 시행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할당개발부하량을 회수조치 할 수 있다.</p> <p>1. 관계기관 및 부서별 협의시 개발사업에 대한 불승인 및 불인·허가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p> <p>2. ~ 5.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개발부하량에 대하여는 회수를 결정한 후에 개발할당자에게 회수조치를 <u>통보</u>하여야 한다.</p>	<p>③ ----- <u>통지</u>-----</p> <p>-----</p> <p>----- <u>통지</u> -----</p> <p>-----</p> <p>-----</p> <p>-----</p> <p>-----</p> <p>-----</p> <p>-----</p> <p>제10조(개발부하량 회수 조치) ① -</p> <p>-----</p> <p>-----</p> <p>-----</p> <p>-----</p> <p>-----</p> <p>-----</p> <p>-----</p> <p>-----</p> <p>1. -----</p> <p>----- <u>불인</u></p> <p><u>가·불허가</u> -----</p> <p>-----</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p> <p>----- <u>대해서는</u> -----</p> <p>-----</p> <p>----- <u>통지</u>하여야 -----.</p>

현행	개정안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 명령을 받은 개발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회수조치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제2항에 따라 ----- ----- ----- ----- -----.</p>

## 공주 정안 2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안 2 농공단지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 경제과 (041-840-23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1년 07월 29일

### 공 주 시 장

#### ▣ 정안2농공단지 지정(변경)

1. 농공단지의 명칭 : 공주 정안 2 농공단지 (변경 없음)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광정리 일원

나. 면 적 : 292,592m<sup>2</sup>

3. 농공단지의 지정(변경)목적 (변경 없음)

-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과 지방산업발전에 기여
- 공주시에 농공단지 조성을 통하여 인구유입, 소득증대, 고용창출 및 재정증대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인 성장 도모
- 공주시의 급증하는 공장수요에 따른 공장의 무분별한 입지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

#### 4.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 시행자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97-11 우성B/D 3층
- 사업 시행자 : (주)공주정안2농공단지에스피씨

####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없음)

가. 기 간 : 2007년 ~ 2011년 6월

- 계획기준년도 : 2007년
- 계획목표년도 : 2011년 6월

나.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민간개발

#### 6. 주요 유치업종 (변경 없음)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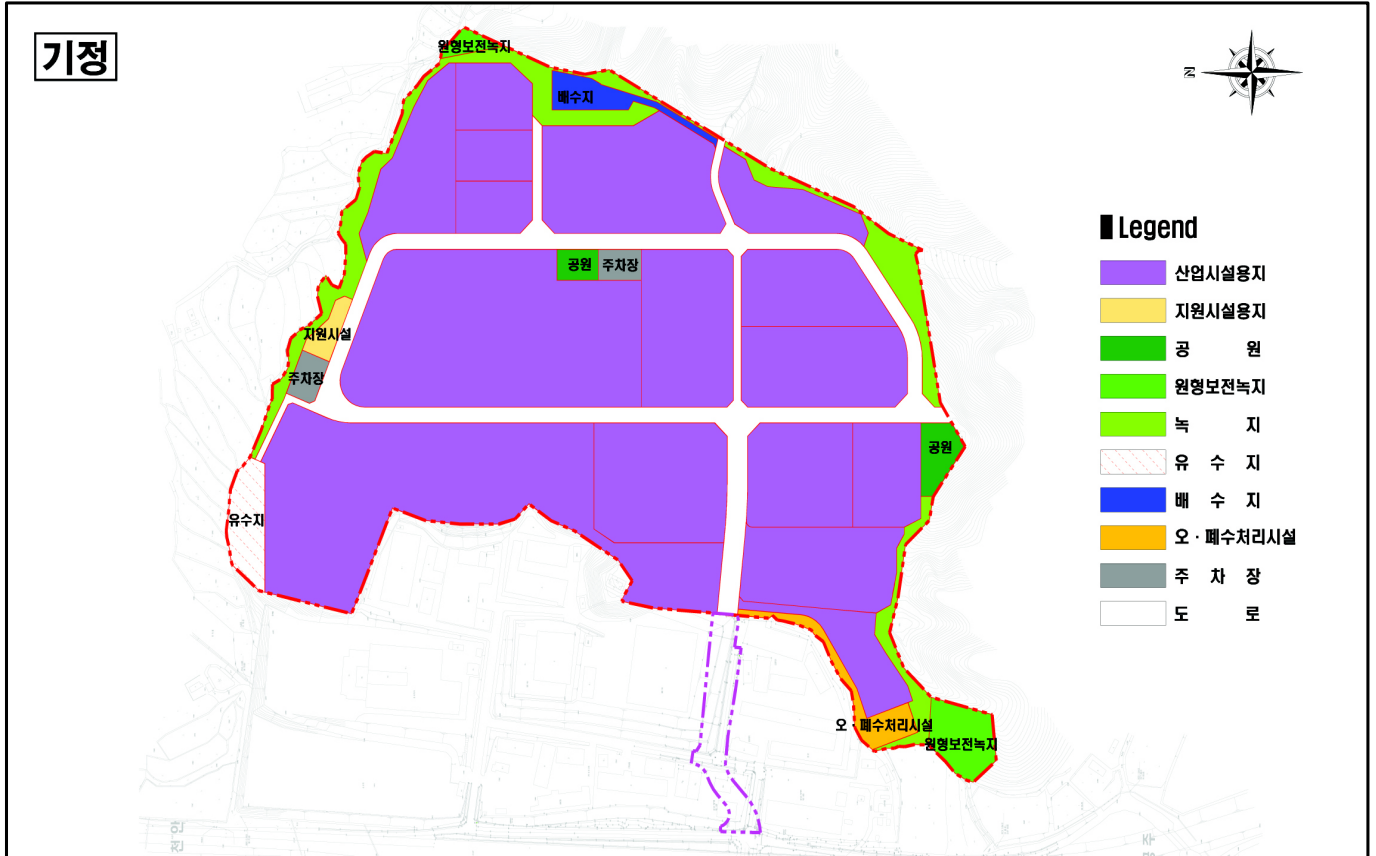
####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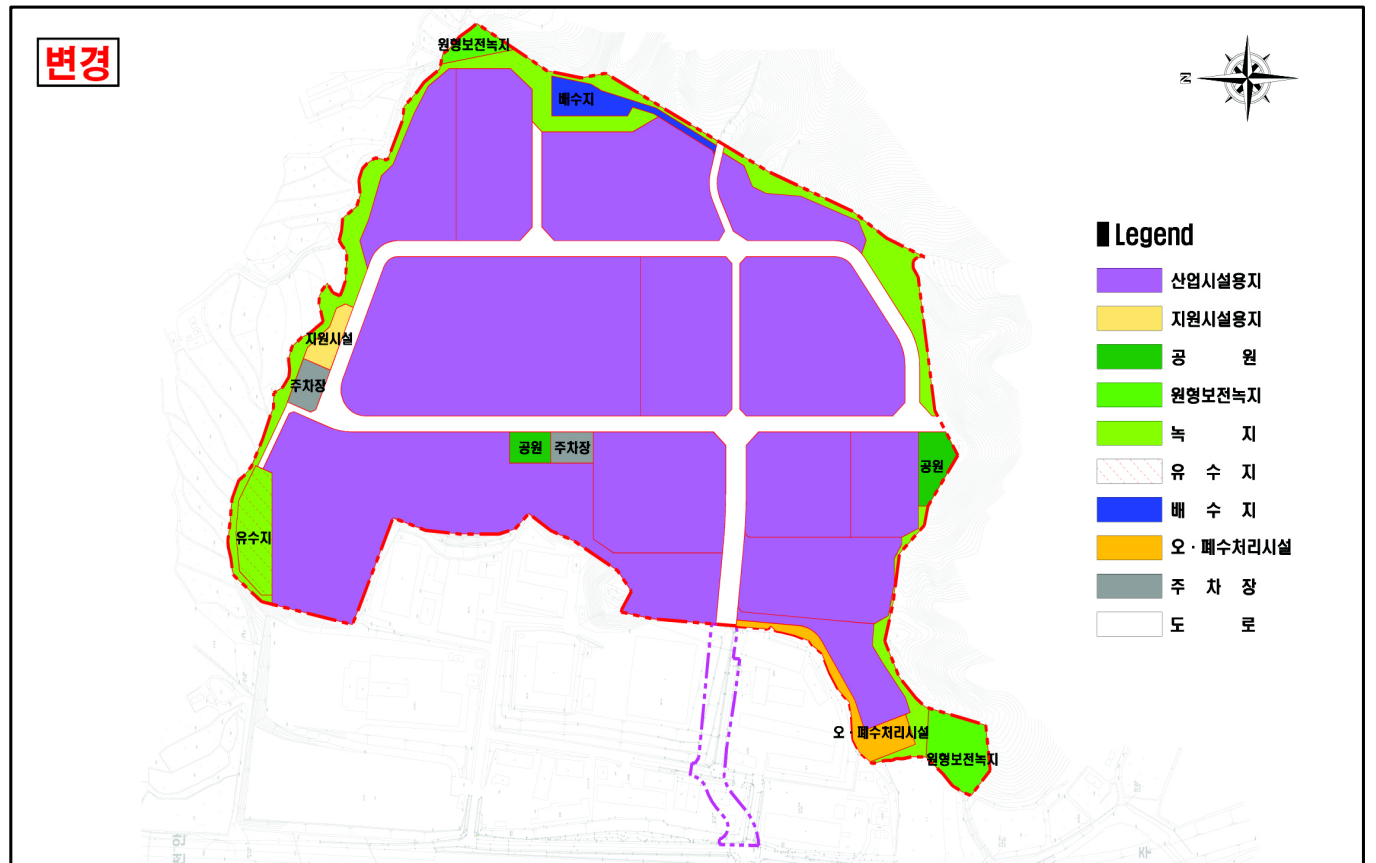
< 토지이용(변경)계획표 >

구	분	면 적 (㎡)			비 율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92,592	-	292,592	100.00
산	업	222,980	▼ 754	222,226	75.95
지	원	1,332	-	1,332	0.46
공	공	2,623	-	2,623	0.90
	지	3,505	▼ 279	3,226	1.10
시	시	2,485	-	2,845	0.97
	설	16,894	△ 1,081	17,975	6.14
녹	지	3,950	▼ 289	3,661	1.25
	용	38,463	△ 241	38,704	13.23
공	공	30,412	▼ 48	30,364	10.38
	시	3,182	▼ 15	3,167	1.08
	용	4,869	△ 304	5,173	1.77

< 토지이용계획(안)도\_기정 >



< 토지이용계획(안)도\_변경 >



## 나. 기반시설계획

### 1) 도로계획

####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8	2,089	30,364	-	-	-	-	-	-	-	-	-
중로	4	1,645	25,853	1	198	4,148	3	1447	21,705	-	-	-
소로	4	444	3,534	1	107	1,070	2	245	1,960	1	89	504
기타	-	-	977	-	-	166	-	-	781	-	-	30

※ 기타는 가각면적

#### ○ 도로 결정(변경)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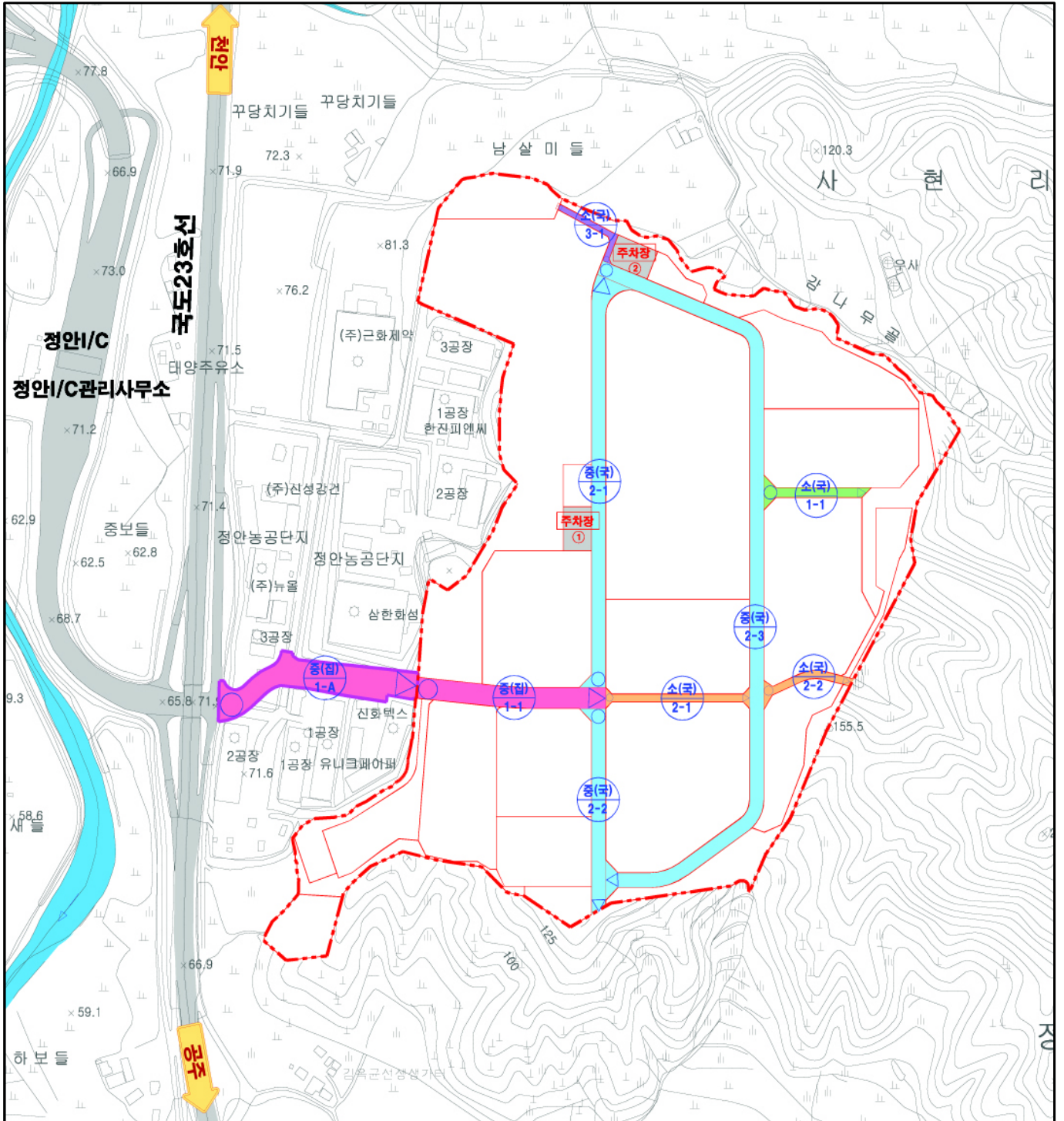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1	집산도로	198	중로1-A	소로2-1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412	중로1-1	중로2-3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205	중로1-1	산1-1입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830	중로2-1	중로2-2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7	중로2-3	산10-1입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50	중로1-1	중로2-3	보행자 전용	농공단지내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95	중로2-3	295-3입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92	중로2-3	320-9도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89	중로2-3	320-9도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 2) 주차장계획

#### ○ 주차장 결정(변경)조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노외 주차장	정안면 사현리 산7-6번지	1,303	-	1,303		위치변경
기정	2	주차장	노외 주차장	정안면 사현리 295-3번지	1,320	-	1,320		

< 가로망계획(안)도 >



**공주 정안 2 농공단지  
가로망 계획(안)도**

**범 례**

- |  |       |  |       |
|--|-------|--|-------|
|  | 중로 1류 |  | 소로 2류 |
|  | 중로 2류 |  | 소로 3류 |
|  | 소로 1류 |  | 주차장   |



### 3) 공원·녹지계획

####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소공원	정안면 사현리 산7-6번지	1,252	-	1,252		위치변경
변경	②	공원	소공원	정안면 사현리 산1-1번지	2,253	감) 279	1,974		면적변경

####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③	녹지	완충녹지	정안면 사현리 산1-1번지 일원	16,894	증) 4,742	21,636		유수지 1개소 (3,661m <sup>2</sup> ) 포함
변경	④	녹지	원형보전 녹 지		4,869	증) 304	5,173		

### 4) 용수공급계획

구 분	계획용수량 (m <sup>3</sup> /일)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1,098.5	1,122.6	
공업용수	987.5	1005.0	
생활용수	117.0	117.6	

#### ○ 수도공급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수도 공급 시설	배수지	정안면 사현리 산2-3번지 일원	2,845	-	2,845		

### 5) 오·폐수처리 계획

구 분	계획용수량 (m <sup>3</sup> /일)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599.72	599.97	
산업폐수	489.15	488.88	
생활오수	110.57	111.09	

####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처리장	정안면 사현리 산1-1번지 일원	3,182	감) 15	3,167		

### 6) 방재시설계획

#### ○ 우수지 결정(변경)조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우수지	저류지	정안면 사현리 295-4번지 일원	3,950	감) 289	3,661		완충녹지와 중복결정

### 7) 폐기물처리시설계획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대부분이 종이류, 캔류, 빈병, PET병 등으로 「재활용 분리수거지침, 1999.1, 환경부」 붙임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품의 범위 및 배출요령(안)에 따라 분리 배출
- 처리대상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수거 한 후 지자체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가연성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소각전문), 불연성 폐기물은 최종처리업체,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

8) 전력공급계획

구 분	전력수요량 (MWh/년)	비 고
합 계	134,672.0	
산업시설용지	134,279.6	
공공시설용지	392.4	

9) 통신공급계획

구 분	규 모	회 선 기 준	통신수요(회선)	비 고
생 산 용	896(종업원수)	1.0회선/10인	116	여유율 30% 적용

8.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가. 오·폐수처리시설

구 분	면 적	총사업비	국비지원	원인자부담
오·폐수처리시설	3,167㎡	5,988,000,000원	4,191,600,000원	1,769,400,000원

9.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해당없음)

▣ 정안2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1. 농공단지의 명칭 : 공주 정안 2 농공단지 (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가. 법인 명칭 : (주)공주정안2농공단지에스피씨

나. 법인 대표 : 김 인 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목적 : 농공단지 개발

나.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시행자 지정에 의한 민간개발
- 주요변경사항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견 반영 및 진입도로계획 변경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광정리 일원

나. 면 적 : 292,592㎡

5.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 2007년 ~ 2011년 6월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정안2농공단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92,592	-	292,592	100.0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92,592		292,592	100.0	

##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1) 교통시설

####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6	1,654.5	24,923	-	-	-	6	1,654.5	24,923	-	-	-
	변경	8	2,086.0	30,364	2	305	5,381	5	1,692.0	24,415	1	89	568
중로	기정	5	1,617.0	24,633	-	-	-	5	1,617.0	24,633	-	-	-
	변경	4	1,645.0	26,405	1	198	4,145	3	1,447.0	22,260	-	-	-
소로	기정	1	37.5	290	-	-	-	1	37.5	290	-	-	-
	변경	4	441.0	3,959	1	107	1,236	2	245.0	2,155	1	89	568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1	21	집산도로	198	중로1-A	소로2-1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중로	2	1	15-16	국지도로	719.3	중로1-1	중로2-2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변경	중로	2	1	15	국지도로	412	중로1-1	중로2-3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165.0	중로2-1	중로2-3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변경	중로	2	2	15	국지도로	205	중로1-1	산1-1임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190.2	중로2-2	320-9도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변경	중로	2	3	15	국지도로	830	중로2-1	중로2-2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폐지	중로	2	4	15	국지도로	437.0	중로2-2	중로2-1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폐지	중로	2	5	15	국지도로	105.5	중로2-1	산2-1임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신설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7	중로2-3	산10-1임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37.5	중로2-1	295-3임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150	중로1-1	중로2-3	보행자 전용	농공단지내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95	중로2-3	295-3임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89	중로2-3	320-9도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	중로 1-1	• 신설 B = 21m, L = 198m A = 4,145m <sup>2</sup>	• 정안2농공단지(변경)계획에 따른 도로 신설	
중로 2-1	중로 2-1	• 도로 폭원, 연장, 시·종점 변경 B = 15m, L = 412m A = 6,531m <sup>2</sup>	• 정안2농공단지(변경)계획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2-2	중로 2-2	• 도로 연장, 시·종점 변경 B = 15m, L = 205m A = 3,113m <sup>2</sup>	• 정안2농공단지(변경)계획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2-3	중로 2-3	• 도로 연장, 시·종점 변경 B = 15m, L = 830m A = 12,616m <sup>2</sup>	• 정안2농공단지(변경)계획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2-4	-	• 폐지	• 정안2농공단지(변경)계획에 따른 도로 폐지	
중로 2-5	-	• 폐지	• 정안2농공단지(변경)계획에 따른 도로 폐지	
-	소로 1-1	• 신설 B = 10m, L = 107m A = 1,236m <sup>2</sup>	• 정안2농공단지(변경)계획에 따른 도로 신설	
소로 2-1	소로 2-1	• 도로 연장, 시·종점 변경 B = 8m, L = 150m A = 1,285m <sup>2</sup>	• 정안2농공단지(변경)계획에 따른 도로 변경	
-	소로 2-2	• 신설 B = 8m, L = 95m A = 870m <sup>2</sup>	• 정안2농공단지(변경)계획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3-1	• 신설 B = 6m, L = 89m A = 568m <sup>2</sup>	• 정안2농공단지(변경)계획에 따른 도로 신설	

□ 도로(단지의외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중로	1	1	20-38	집산도로	225	중로3-1	중로2-1	진입도로	농공단지		
폐지	중로	3	1	12-18	보 조 간선도로	729	313-1도	495도	진입도로	농공단지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중로 1-1	-	• 폐지	• 정안2농공단지 진입도로 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중로 3-1	-	• 폐지	• 정안2농공단지 진입도로 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나)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⑤	주차장	노외 주차장	정안면 사현리 295-3번지 일원	2,028	감)708	1,320		
변경	1-④	주차장	노외 주차장	정안면 사현리 산2-3번지 일원	1,353	감)50	1,303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3-⑤	주차장	• 주차장 A = 1,320m <sup>2</sup>	• 정안2농공단지(변경)에 따라 대상지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이용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위치 및 규모 변경	
1-④	주차장	• 주차장 A = 1,303m <sup>2</sup>		

## 2) 공간시설

### 가) 공원 결정(변경)조서

####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③	공원	소공원	정안면 사현리 산2-3번지 일원	840	증)412	1,252		
변경	6-⑤	공원	소공원	정안면 사현리 295-3번지 일원	1,295	감)679	1,974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1-③	소공원	• 소공원 A = 1,252m <sup>2</sup>	• 정안2농공단지(변경)에 따라 대상지내 종사자 및 이용객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위한 소공원의 위치 및 규모 변경	
6-⑤	소공원	• 소공원 A = 1,974m <sup>2</sup>		

### 나) 녹지 결정(변경)조서

####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⑧	녹지	완충녹지	정안면 사현리 산1-1번지 일원	20,079	증)1,557	10,622		1-③은 우수지와 중복결정
	4-②						5,134		
	6-⑧						2,219		
	1-⑤						3,661		
변경	3-⑦	녹지	원형보전 녹 지		7,711	감)2,538	1,375		
	6-⑦						3,798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3-⑧	완충녹지	• 완충녹지 A = 21,636m <sup>2</sup>	• 정안2농공단지(변경)계획에 따른 녹지 변경	
4-②				
6-⑧				
1-⑤				
3-⑦	원형보전 녹 지	• 원형보전녹지 A = 4,869m <sup>2</sup>	• 정안2농공단지(변경)계획에 따른 원형보전녹지 변경	
6-⑦				

### 3) 유통 및 공급시설

#### 가) 수도공급시설 결정(변경)조서

##### 수도공급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⑥	수도 공급 시설	배수지	정안면 사현리 산2-3번지 일원	3,818	감)973	2,845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3-⑥	배수지	• 배수지 면적 변경 A = 2,845m <sup>2</sup>	• 대상지내 원활한 수도공급처리를 위한 배수지 면적 변경	

### 4) 환경기초시설

####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⑥	수질오염 방지 시설	오폐수처리장	정안면 사현리 산1-1번지 일원	3,118	증)49	3,167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6-⑥	오·폐수처리장	• 오폐수처리시설 면적변경 A = 3,167m <sup>2</sup>	• 정안2농공단지(변경)계획에 따른 면적 변경	

5) 방재시설

가) 우수지 결정(변경)조서

우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⑤	우수지	저류지	정안면 사현리 295-4번지 일원	3,292	증)369	(3,661)		완충녹지와 중복결정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1-⑤	우수지	• 우수지 면적 변경 A = (3,661)m <sup>2</sup>	• 정안2농공단지(변경)계획에 따른 면적 변경	

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형	정안면 사현리 산1-1번지 일원	292,592	-	292,592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참조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가) 산업시설용지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합 계			-	222,226	
1	①		정안면 사현리 산7-5번지 일원	43907	
	②		정안면 사현리 315번지 일원	15,323	
2	①		정안면 사현리 산10-1번지 일원	43394	
	②		정안면 사현리 316번지 일원	14,172	
3	①		정안면 사현리 산10-2번지 일원	10,251	
	②		정안면 사현리 산10-1번지 일원	12455	
	③		정안면 사현리 산2-3번지 일원	18,301	
4	①		정안면 광정리 산44번지 일원	6,325	
5	①		정안면 사현리 산1-1번지 일원	22,808	
6	①		정안면 사현리 산1-1번지 일원	10,654	
	②		정안면 사현리 산1-1번지 일원	6,873	
	③		정안면 사현리 319번지 일원	12,068	
	④		정안면 사현리 산1-1번지 일원	5,695	

#### 나) 지원시설용지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3	④		정안면 사현리 295-3번지 일원	1,332	

#### 다) 공원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합 계			-	3,226	
1	③		정안면 사현리 산2-3번지 일원	1,252	
6	⑤		정안면 사현리 295-3번지 일원	1,974	

라) 원형보전녹지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합 계			5,173	
3	⑦	정안면 사현리 산12-4번지 일원	1,375	
6	⑦	정안면 사현리 산1-1번지 일원	3,798	

마) 완충녹지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합 계		-	21,636	
3	⑧	정안면 사현리 43-2번지 일원	10,622	
4	②	정안면 광정리 산43-10번지 일원	5,134	
6	⑧	정안면 사현리 산1-1번지 일원	2,219	
1	⑤	정안면 사현리 295-4번지 일원	3,661	

바) 주차장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합 계		-	2,623	
1	④	정안면 사현리 산2-3번지 일원	1,303	
3	⑤	정안면 사현리 295-3번지 일원	1,320	

사) 배수지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3	⑥	정안면 사현리 산2-3번지 일원	2,845	

아) 유수지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1	⑤	정안면 사현리 295-4번지 일원	(3,661)	완충녹지와 중복결정

자) 오·폐수처리시설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6	⑥	정안면 사현리 산1-1번지 일원	3,167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광정리 일원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33조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함
		건 폐 율	• 70% 이하 (시도조례 제53조 규정)
		용 적 률	• 150% 이하 (시도조례 제58조 규정)

7. 행위의 제한

- 정안2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정안2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 실음 생략**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실음 생략**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실음 생략**

## 공주시 공고 제 2011- 758 호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16일

# 공 주 시 장

##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1. 개정이유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입점제한과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1. 6. 15.일 조례가 공포·시행되었으나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제10813호)이 2011. 6.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전통산업보존구역 범위 확대 (안 제12조제1항)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호의 전통산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2조제1항의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을 당초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개정

## 나.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의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 제2항)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등록시 부여되는 조건등의 부과 및 유효기간이 당초 2013년 11월 23일까지에서 2년 연장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개정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경제과(경제정책담당)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연 락 처 : 전화 041-840-2313, FAX 041-840-2350

###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한다.

부칙 제2항 중 “2013년 11월 23일”을 “2015년 11월 23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p> <p>① 시장은 공주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u>500미터</u>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p>① (생략)</p> <p>② (유효기간) 제9조제7호·제8호 및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u>2013년 11월 23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p>	<p>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p> <p>① ----- ----- ----- ----- ----- <u>1킬로미터</u>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2015년 11월 23일</u> ----- -----.</p>

## 드림스타트 전문수행인력 채용계획 공고

중학·옹진·옥룡·금학동 거주하는 아동에게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미래의 희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인 지원과 서비스 줌으로 빈곤 탈출 아동문제 사전방지, 예방적 기능을 위한 보건, 보육·교육 및 복지업무수행, 사례관리 등 드림스타트 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8 일

### 공 주 시 장

####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 보건지원사업 분야

- 사례관리, 가정방문 건강관리, 건강상담, 건강진단, 정서조절 프로그램 ADHD아동 소그룹 예방교육,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2.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기간 : 2011. 8. 8(월) ~ 2010. 8. 22(월)

- ※ 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ongju.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및 복지과 방문시 교부

#### 3. 채용인원 : 간호사 1명 (기간제 근로자)

#### 4. 채용직종 : 간호사

#### 5. 급여수준 : 월액 (150만원 수준, 근로소득세 포함)지급

- 국민연금, 건강, 요양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포함

## 6. 응시자격

- 가.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 충남에 둔 자.
- 나. 자격제한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다. 응시연령 : 제한없음
- 라.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마.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바. 우대조건 : 의료기관 근무경력자, 컴퓨터자격증 소지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7. 고용기간

- 2011년 계약일로부터 ~ 2011. 12. 31일 (비정규 일시사역)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09:00 ~ 18:00)
  - \* 근무시간은 업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근무부서 : 공주시청 복지과, 드림스타트 센터

##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본 공고문에 첨부된 파일만 사용, 변형금지)
  - 최근 6개월 이전에 촬영한 반명함판(3×4cm)사진 2매 부착.
- 자필이력서 1부 (반명함판 사진 부착).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서식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PC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운전면허증 소지자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종 합격자)

## 9. 채용방법

- 1 차 : 서류전형
- 2 차 : 심층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지)

## 10. 원서접수 : 공주시청 복지과 ☎ 041) 840-8168, -8170.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개별 제출(우편접수 불가)
- 면접시험 : 2011. 8.26(오전 10시) / 복지과 대화방
- 합격자발표 : 2011. 30(화). (<http://www.gongju.go.kr>) 홈페이지 게시)

## 11. 응시자 유의사항 :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인터넷 (공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 바람.

## 공주시 공고 제2011 - 775호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6일

# 공 주 시 장 인

##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기금용도 변경 (안 제3조)

나. 기금의 법정 적립액 변경 (안 제5조)

다. 장기예치기금의 예치·관리 기관 명칭 변경 (안 제6조)

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재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14-702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재난관리과

○ 전화 : 041)840-2824 / FAX 041)840-2696

####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를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를 “법 제68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4조제1호 마목에 따라”로, “실비를”을 “실제 비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 내지 제42조”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한다.

제5조 중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영 제75조제2항”으로, “30”을 “15”로,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를 “한다)을”로,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공주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를“(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3조에 따라”로,“시의 지정금고에”를“공주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당해연도”을“해당연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를“「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에”로,“비치하고”를“갖추어 두고”로,“증빙서류”를“증명서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소속하에”를“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1인을 포함한 15인”을“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안”을“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1인”을“1명”으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기타”를“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을“「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기타”를“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시행에 관하여”를“시행에”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공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li> <li>2. (생략)</li> <li>3. 기타 잡수입 등</li> </ol> <p>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5. (생략)</li> </ol> <p>제4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p>	<p>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p> <p>제1조(목적) --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 ----- ----- ----- -----.</p> <p>제2조(기금의 조성)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그 밖에 -----</li> </ol> <p>제3조(기금의 용도)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4조-----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5. (현행과 같음)</li> </ol> <p>제4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p>

현행	개정안
<p>임차비용 용자 등) ① 영 제74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u>실비를</u> 지원한다.</p> <p>② 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p> <p>③ (생략)</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u>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u>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u>당해연도에</u>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p>	<p>임차비용 용자 등) ① 영 제74조 제1호마목에 따라 ----- ----- ----- <u>실제 비용을</u> -----.</p> <p>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 ----- ----- ----- ----- 영 제75조제2항----- ----- 15 ----- (----- 한다) 을 ----- ----- ----- ----- <u>해당</u> <u>연도</u> ----- -----.</p>

현행	개정안
<p>제6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u>장기예치기금액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u></p>	<p>제6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u>장기예치기금액은 공주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u></p>
<p>제7조(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u>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u></p> <p>② <u>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u></p>	<p>제7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u>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3조에 따라 ----- 공주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서 ---.</u></p> <p>② <u>해당연도 -----</u></p> <p>-----.</p>
<p>제9조(회계공무원) ① (생략)</p> <p>② <u>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u></p>	<p>제9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에 -----</u>  <u>갖추어 두고 ----- 증빙서류 -----.</u></p>

현행	개정안
<p>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u>소속하에</u>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u>1인을 포함한 15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생략)</p> <p>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담당관·국장·단장 또는 과장중 <u>제2항의</u>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u>1인</u>을 두되, 재난관리 업무담당주사가 된다.</p>	<p>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 <u>소속으로</u> ----- -----.</p> <p>② ----- ----- <u>1명을 포함한 15명</u>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제2항에 따라 위원회</u> <u>의 정원 범위</u> ----- -----.</p> <p>⑤ ----- ----- <u>1명</u> ----- -----.</p>
<p>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략)</p> <p>4. <u>기타</u>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p>
<p>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p>	<p>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 -----</p>

현행	개정안
<p>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기타</u>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p> <p>③ 시장은 <u>제1항의</u>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u>시행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 -----.</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 -----</p> <p>③ ----- <u>제1항에 따라</u> ----- ----- ----- ----- ----- -----.</p> <p>제14조(시행규칙) ----- <u>시행에</u> ----- -----.</p>